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명예수당 지급규정 신설 등〉

-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19호)
-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48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개 요	1
1.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919호)	1
2.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2348호)	2
II. 검토의견	4
1. 특수임무사망자 및 부상자의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근거 마련(김동아의원안)	4
2.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명예수당 지급규정 신설(김동아·이병진의 원안)	9
※ 참고자료	23

I. 개 요

1.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91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동아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5. 8. 1.
- (3) 회 부 일 : 2025. 8.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보훈병원 이용, 수송시설 지원 등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과 같은 정기적인 금전적 보상제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재 특수임무유공자는 의료비 지원이나 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현물 중심 지원을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정전협정 위반사항과 관련된 민감한 영역에 있어 공개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들은 국가를 위해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헌도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참전유공자나 다른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명예수당과 같은 정기

적인 금전적 예우가 없어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낮고, 이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물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예우를 제공하고, 특수임무유공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적절히 인정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안 제75조의4 신설 등).

2.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234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8. 25.
- (3) 회 부 일 : 2025. 8.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는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훈

대상자와 달리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명예수당 지급을 통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5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안 제76조의2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특수임무사망자 및 부상자의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자법상 보상 근거 마련(김동아의원안)

- 개정안은 특수임무사망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몰·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사망군경으로, 특수임무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상·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부상군경으로 보고 해당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보상) ①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해당 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u>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u> <u>②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u>

-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임무유공자¹⁾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²⁾됨.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으로 등록 결정³⁾하여 보상금 지급⁴⁾ 등의 예우를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보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보상 대상자에게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두는 것이 의회유보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이해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법에서 직접 규정⁵⁾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 ①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지를 결정할 때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및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 결정한다.
- 4) 특수임무 사망자 및 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등의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 지급(본인 65~387만원, 유족 61~236만원)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납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보훈체계상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한정⁶⁾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 결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시행령과 같이 특수임무부상자 중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 결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⁷⁾.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 7)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개 정 안	수정의견
제6조의2(보상) ① (생략) ②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제6조의2(보상) ① (생략) ②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 국가보훈부는 특수임무사망자·부상자는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어,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의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2.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명예수당 지급규정 신설(김동아·이병진 의원안)

-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과 명예수당 관련 권리보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김동아의원안은 ‘모든 특수임무유공자’, 이병진의원안은 ‘65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를 그 지급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김동아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신 설>	제75조의4(특수임무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특수임무 수행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제76조의2(특수임무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u>65세 이상의</u>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특수임무수행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이 특수임무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

경우에는 본인이 특수임무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 제7조
의3에 따른 수당
을 지급받는 경우

4. 「참전유공자 예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
조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을 지급받
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
중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 제7조
의3에 따른 수당
을 지급받는 경우

4. 「참전유공자 예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
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특수임무명예수
당은 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
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제1항제1호·
제5호·제6호에 규
정된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달
까지 지급한다. 다
만, 특수임무명예수
당 지급연령이 지
난 후에 제6조제1
항에 따른 등록신
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
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② 특수임무유공자
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특수임무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특수임무명예수
당은 수당지급 대
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
신관서(이하 “체신
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
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입금하는 방법
으로 지급한다. 다
만,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 특수임무유공자
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특수임무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특수임무명예수
당은 수당지급 대
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
신관서(이하 “체신
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
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입금하는 방법
으로 지급한다. 다
만,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손상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불
가피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
으로 지급할 수 있
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특수임무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
상자가 본인 명의
로 특수임무명예수
당만 입금될 수 있
는 예금계좌를 개
설하여 지정한 경
우에는 해당 예금
계좌로 특수임무명
예수당을 입금하
여 한다.

⑤ 미지급 특수임
무명예수당의 지급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손상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불
가피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
으로 지급할 수 있
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특수임무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
상자가 본인 명의
로 특수임무명예수
당만 입금될 수 있
는 예금계좌를 개
설하여 지정한 경
우에는 해당 예금
계좌로 특수임무명
예수당을 입금하
여 한다.

⑥ 미지급 특수임
무명예수당의 지급

<신 설>

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⑥ 특수임무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5(권리의 보호) ① 특수임무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75조의4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특수임무명예수당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

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특수임무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3(권리의 보호) ① 특수임무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76조의2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특수임무명예수당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

	<u>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에 따라 특수임무명예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u>	<u>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에 따라 특수임무명예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u>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 ----- ----- ----- ----- ----- ----- ----- ----- ----- -----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 ----- ----- ----- ----- ----- ----- ----- ----- ----- -----

다), 제29조에 따른	-----	-----
직업재활훈련비·	-----	-----
직업능력개발훈련	-----	-----
비, 제29조의2에 따	-----	-----
른 능력개발 장려	-----	-----
금·지원비, 제33조	-----	-----
및 제33조의2에 따	-----	-----
른 의료지원비, 제4	-----	-----
7조에 따른 보조금,	-----	-----
제70조의2에 따른	-----	-----
요양지원에 대한	-----	-----
<u>보조금 및 제75조</u>	-- <u>보조금,</u> -----	-- <u>보조금,</u> -----
<u>의2에 따른 생계지</u>	----- <u>생계지원</u>	----- <u>생계지원</u>
<u>원금(이하 “학습보</u>	<u>금 및 제75조의4에</u>	<u>금 및 제76조의2에</u>
<u>조비등”이라 한다)</u>	<u>따른 특수임무명예</u>	<u>따른 특수임무명예</u>
<u>을 환수하되, 제1호</u>	<u>수당</u> -----	<u>수당</u> (-----
<u>에 해당하는 경우</u>	-----	-----
<u>납부 의무자의 귀</u>	-----	-----
<u>책사유가 있는 때</u>	-----	-----
<u>에는 그가 받은 학</u>	-----	-----
<u>습보조비등에 대통</u>	-----	-----
<u>령령으로 정하는</u>	-----	-----
<u>이자를 붙여 환수</u>	-----	-----
<u>하여야 한다. 다만,</u>	-----	-----
<u>상속인의 경우 상</u>	-----	-----
<u>속으로 받은 재산</u>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② ~ ④ (현행과
같음)

[illegible]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관계 기관의 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 -----.
1. ~ 10의3. (생 략) <u><신 설></u>	1. ~ 10의3. (현행 과 같음) <u>10의4. 제75조의4에 따른 특수임무명 예수당 지급에 관 한 사무</u>	1. ~ 10의3. (현행 과 같음) <u>10의4. 제76조의2에 따른 특수임무명 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u>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1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
용하지 않으므로⁸⁾, 신설되는 명예수당은 특수임무공로자⁹⁾가 그 지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이
법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부터 제58
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2까지,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예외로 한다.

금대상이 됨.

□ 개정안은 특수임무공로자에게 정기적인 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예우를 제공하고 이들의 명예를 선양한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 제정 당시 금전적 보상을 배제한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제16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¹⁰⁾이 의결(2004. 1. 8.)되어 제정되었는데, 당시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 관한 법률안」¹¹⁾이 동시에 논의·제정되었음. ‘보상법’은 보상금 지급을 위한 규정을 두고, ‘유공자 예우법’은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음¹²⁾.

- 이에 따라 2025년 10월 기준 6,728명의 특수임무수행자가 국방부로부터 특수임무수행 당시의 신분, 임무의 종류, 근무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됨.

9) 현행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되는데, 특수임무공로자는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중 그 부상 정도가 상이등급에 미달하는 자를 의미함.

10)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제162533호, 김성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일 2003. 8. 12.)

11)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 관한 법률안(제162534호, 김성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일 2003. 8. 12.)

12) 다만, 국가유공자법 개정(2002. 3. 1. 시행)에 따라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특수임무요원은 국가유공자로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부상을 입지 않은 공로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한 것이고, 보상법은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상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함(「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인원 현황(2025.10.)>

(단위: 명)

구 분	특수임무수행자				교육훈련자				합 계
	전사자	장해자	임무수행자	소 계	사망자	장해자	교육훈련자	소 계	
인 원	1,164	324	1,034	2,522	55	2,809	1,342	4,206	6,728

주: 1. 특수임무수행자는 실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전사자·장해자는 보상금과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이고, 임무수행자는 보상금과 특별공로금 지급 대상임

2. 교육훈련자는 실제 특수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상금과 공로금 지급 대상임

자료: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특수임무유공자 보상수준>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8,400만원 ~ 2억 8,000만원	· 공상: 2,700만원 ~ 1억 7,000만원 · 전상: 1억 5,000만원 ~ 2억 8,000만원	4,900만원 ~ 1억 3,000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둘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사하게 보상 관련 법과 보훈 관련 법으로 나눠 보상과 예우를 하고 있는 5·18민주유공자¹³⁾도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일시보상 받았기 때문에 추가 금전적 지원은 없다는 점을 전체 보훈체계적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김동아의원안 기준 향후 5년간 395억 6,800만원(연평균 79억원), 이병진의원안 기준 향후 5년간 142억 6,500만원(연평균 29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13)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전체 특수임무공로자 명예수당 지급 소요예산(김동아의원안)>

구 분	합계	연평균	2026	2027	2028	2029	2030
①인원(명)	6,115	1,223	1,255	1,239	1,223	1,207	1,191
②단가(천원)	-	540	480	510	540	570	600
소요예산(백만원) (①×②×12)	39,568	7,913	7,229	7,583	7,925	8,256	8,575

* 인원: 최근 5년간(2020~2024년)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인원 증감률(-1.3%) 적용

** 단가: '25년 참전수당 기준(450천원), 최근 2년간 참전명예수당 연평균 인상액(+30천원)

자료: 국가보훈부

<65세 이상 특수임무공로자 명예수당 지급 소요예산(이병진의원안)>

구 분	합계	연평균	2026	2027	2028	2029	2030
①인원(명)	2,188	438	393	412	434	459	490
②단가(천원)	-	540	480	510	540	570	600
소요예산(백만원) (①×②×12)	14,265	2,853	2,264	2,521	2,812	3,140	3,528

* 인원: '25.8월말 65세 이상 특수임무공로자 인원 기준

** 단가: '25년 참전수당 기준(450천원), 최근 2년간 참전명예수당 연평균 인상액(+30천원)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일시보상을 받아 금전적 지원을 제외한
현행법 제정의 취지, 5·18민주유공자와의 형평,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는 특수임무수행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등을 이미 지급 받았으므로 추가로 명예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07

참고1

특수임무유공자 현황

□ 적용대상

적용대상	근거법령	대 상 요 건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 등록현황

(‘25. 8월말 기준, 단위:명)

구 분	계	사망(행불)자	부상자	공로자
합 계	3,943	26	1,319	2,598
본 인	2,802	-	1,132	1,670
유 족	1,141	26	187	928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2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수혜 사항

구분	내 용
수당 지원	○ 생계지원금 : 80세 이상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한함 * 생활조정수당과 중복 불가, 2022.2.18.부터 시행
교육 지원	○ 수업료 등 면제 : 부상자, 공로자 본인 및 자녀,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중고대학교) ○ 학습보조비 지급 : 부상자·공로자 본인·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중고대학교), 자녀(중고등학교) ※ 생활수준조사 결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 ※ 2016.6.23.이후 등록한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전입학)한 경우에 지원
취업 지원	○ 보훈특별고용 : 본인, 배우자, 부모 및 39세 이하인 자녀 3인까지 ○ 가정취업, 직업훈련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 2016.11.30.이후 등록신청자 : 보훈특별고용·일반직등 특별채용 취업은 자녀 1명(1인당 취업지원 횟수 3회) ※ 2016.11.30.이후 등록신청자 : 부모, 비상이자 및 상이 7급 자녀 취업지원 비대상
의료 지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 국비 ※ 2016.6.23. 이후 등록 신청한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단, 전·공상군경 복합등록자의 경우 2012.7.1. 이후 등록 신청한 7급 상이자에 대해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 보철구 지급 － 응급진료 :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보훈관서 신고 * 14일경과 3년 이내 신고시 처음 입원한날부터 14일의 진료비만 지원('18.7.31 이후 이용자만 소급적용) － 등록 신청 시부터 결정 이전 :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전 납부 후 정산 (단, 위탁병원은 '21.4.1. 이후 등록신청자부터 적용) * 필요 시 보훈병원장의 승인 하에 외부 전문병원 진료 의뢰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가족 － 보훈병원 진료 : 60% 감면 ※ 2016.6.23. 이후 등록 신청한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에게 지원(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부모 모두 포함)
대부 지원	○ 대상: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주택(구입, 임차, 개량), 아파트 분양, 사업, 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 － 대부한도액은 300~8,000만원까지(연 3.0~4.0%)
주택 우선공급	○ 신규건설·공급주택 우선공급 : 분양 5%, 임대 10%(공급물량기준)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 2%(공급물량기준)
기타 지원	○ 양로지원 : 무의탁자(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 단 부상자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 유공자 본인 입소 시 배우자 동시 입소 가능(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 양육지원 : 미성년자녀 및 미성년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보훈요양원 및 민간요양시설 이용 : 생활수준 고려 － 부상자 :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기타 대상자와 배우자, 선순위 부모 :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 지원 ○ 수송시설 이용지원 : 부상자 본인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 지원요건 해당자 ○ 고궁 등 무료이용/협약콘도 감면이용(소노·한화일상·청풍·주문진·리솜·통영스탠포드) ○ 주민등록인감증명·가족관계증명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 영구용태국가·대통령령의 근조기 증명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유공자 본인 사망시, 지원요건 해당자)

자료: 국가보훈부

